

# 災害事例研究

-編輯部-

## 1. 災害形態：프레스에 의한 협착재해

## 2. 事業場 概要

- 가. 業種：金屬製品製造業 (S 공업)
- 나. 勤勞者數：200名 (事務職 30名)
- 다. 主要生産品：自動車타이어휠, 알루미늄  
주물등

라. 災害發生日：'85.5.17. 18:50

마. 災害程度：死亡1名

## 3. 災害發生概要

'85.5.17. 18:50경 被災者は 完製品인  
自動車타이어휠의 水壓 試験을 하던 중 프  
레스 上型과 水壓用 물을 담아두는 용기의  
앞부분 사이에 머리가 끼어 失神狀態에 있  
는 것을 다른 劍勤者가 發見하여 病院으로  
移送하였으나 死亡.

## 4. 災害發生原因

본 災害는 희귀한 災害로서 機械内部에 머리  
를 밀어 넣었다는 事實은 상상을 초월한 일로  
서 事故當時 他殺의 可能性마저 고려했다는 수  
사관의 언질에서도 事故의 概然性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調査는 3分野로 나누어 체크하였다.

① 작업환경 ② 기계설비 ③ 작업方法 이  
에 對하여 다음 事項에 유의하여 重點的으로 調  
査하였다.

### 1. 機械配置와 機械機能 및 安全裝置

## 2. 作業工程과 進行

3. 作業動作을 實地 다른同一한 機械를 사  
용하여 現場檢證을 하고

4. 被害者の 性格, 教育상태, 生活條件, 平常  
時 근무상태, 交友문제 등을 調査하였다.

問題의 핵심은 왜 머리를 機械内部에 밀어 넣  
었는가 하는 문제였다.

5. 實地 作業動作의 檢證과정에서 다음과 같  
은 문제들을 지적할 수가 있었다.

① 工作環境은 同一場所를 通路와 機械作業場  
으로 兩分되어 있어 通路側照明과 作業區域의 照  
明과는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② 工作對象은 自動車 타이어휠을 1개 (무게  
4.5kg) 양손으로 집어들고 試験機에 장착시험하  
는 일로서 長時間 工作할 경우 피로度가 높은工  
業이며 따라서 事故發生時間이 오후 18:50분으  
로 피로가 最高에 달하고 있었다.

③ 單獨作業으로 相互감시 내지는 確認體制가  
되어 있지 않으며 다른 機械와 分離 配置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機械옆에 높이 1.8m가량의 製品  
臺가 있어 完全히 다른 동료와 차단된 位置에서  
作業을 하고 있어 心理的으로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었다.

④ 機械는 极히 단순하나 作業은 製品의 完  
成 檢查로서 正確性이 要求되는데 比하여 直接  
照明등이 없어 不實檢査의 우려가 게재하였다.

⑤ 製品이 作業者 中心으로 운반되어 진열되

고 있어 被害者가 製品을 들어 機械에 장착하기 為하여는  $90^{\circ}$  身體를 回轉移動을 하여 製品을 들어 올려 기계에 설치해야 하므로 過重한 動作上의 에너지 부담은 不安全行動의 動機를 부여하고 있었다.

⑥ 被害者は 极히 誠實하고 10年 경력의 노련한 근로자였으나 身上記錄카드에 教育事項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 安全教育의 숙지 상태를 확인할 수가 없었다.

⑦ 安全管理者는 機械安全技師 2級 所持者가 선임 配置되어 있었으며 安全담당者は 없었다.

⑧ 社内安全教育은 年 1, 2회 정도로서 희소한 편이었으며 教材가 全無하여 安全知識不足을 지적할 수가 있었으며

⑨ 가장 중요한 것은 安全장치는 正常的으로機能하고 있었으나 機械本體에 밀착되어 있어 兩手操作하면서도 머리를 속이면 機械内部로 쉽게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이상과 같은 事實을 綜合的으로 判斷해 볼 때 본 災害의 原因은 많은 복합적 要因을 内포하고 있어 根本的으로 作業工程의 配置에서부터 作業動作에 이르기까지 제조정이 요구되는 事例이다.

## 5. 問題點 및 對策

### 가. 管理體制 및 一般事項

- 1) 直接原因 : 安全裝置가 기계 本體와 밀착되어 있어 安全裝置를 作動시킨 상태에서 도 身體의 一部가 危險구역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開放되어 있는 점과 異常時는 機械를 停止시켜야 함에도 작동상태에서 異常을 확인하려다 事故가 發生한 것이다.
- 2) 間接原因 : 照明不良 및 プレス機 安全裝置의 位置가 安全장치 설치기준 ( 기술상의 지침 )에 미달하였다.  
( 위치 선정기준 = .160 cm × 슬라이드 下降속도 )
- ① 兩手操作式 누름단추가 너무 近接 設置 ( 5 cm ) 된 點.
- ② 兩手操作式 누름단추가 높게 設置되어 있어 평소 作業時 머리部分이 危險地點에 近接하게 되어 있는 點.
- ③ 照明施設이 作業者뒤에 設置되어 있어 作業地點에 그늘이 생기며, 시험기 内部의 오물이 그림자에 의해 크게 擴大되어 製品損傷의 우려를 증대시키므로서 책임감을 자극 순간적으로 不安全行動의 動機를 부여.

問　題　點	對　策	備　考
1) 管理體制 ① 一安全保健管理體制 및 職務履行 未備 ② 安全담당자의 未指定 ③ 生產 Line 的 부서장의 安全責任 全務	o 管理體制 生產 Line 의 安全管理 體制를 확립하여야 한다. 安全담당자의 선임과 部署長에게 安全의 責任을 부여하고 安全作業을 制度化하여 固有業務로 安全을 수행케 하는 조치가 요망	同法 第 12 條, 13 條, 施行令 第 11 條

問　題　點	對　策	備　考
<p>2) 教育事項</p> <p>① 一全勤勞者에 대한 安全教育 不實</p> <p>② 一危險機械分野 勤勞者에 대한 機能的 安全教育 全無</p> <p>③ 一生產部署長의 安全知識 不足</p>	<p>◦ 教育事項</p> <p>—全社員 200 명 중 事務職 勤勞者 30 명을 除外한 生產職 勤勞者 180 여 명 중 50 % 이상인 98 명이 勤務年限 1 年未滿으로 教育의 必要性이 절실히 要求되며, 형식적인 教育을 止揚하고 事業場의 安全性과 危險性을 評價한 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計劃을 세워 일시적이 아닌 體系的인 教育이 되도록 실시</p> <p>—危險部署, 危險機械에 대한 特別敎育 實施하되 반드시 당해 기계에 대한 현실적 교육이 되도록 실시</p> <p>—管理監督者の 安全意識이 不足하므로 安全作業指導要領 및 管理監督者の 實踐技法等 安全敎育을 實施하여隨時 確認監督하는 것의 生活화</p> <p>—敎育은 반드시 教材를 준비하여 실시하고 次期敎育과 연결하여 일관성 있게 실시</p>	<p>同法 第 11 條, 第 23 條, 施行規則 第 14 條, 第 15 條, 教育規定 第 82 條.</p>
<p>3) 管理의인 事項</p> <p>① 一安全管理規定 및 安全守則 未備</p> <p>② 一安全標識 未附着</p> <p>③ 一危險機械 器具에 對한 危險評價 및 保全管理 未備</p> <p>④ 一作業場內의 工作환경이 非合理的 (운반경로, 통로등)</p> <p>⑤ 一整理整頓 不徹底</p> <p>⑥ 一最高經營者의 安全意識</p>	<p>◦ 管理의인 事項</p> <p>—근로자들이 지킬 수 있는 實質의인 安全管理規定을 作成하고 全社員에게 주지</p> <p>—各 機械別 安全守則 및 安全標識 作成 附着(시험기, 주조기, 高壓 가스貯藏所, 油類貯藏所, 高熱作業部署, プレス등)</p> <p>—安全點檢表를 作成하고 부착만 할것이 아니라 지키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되 義務化조치가 필요하다.</p> <p>즉 습관화되도록 하고 근무성적에 반</p>	<p>同法 第 17 條, 施行規則 第 280 條, 第 357 條, 第 187 條, 第 191 條 第 114 條, 第 115 條</p>

問　題　點	對　策	備　考
<p>缺與</p> <p>⑦ 작업장내의 照明配置不良</p> <p>⑧ 作業配置 모순과 單獨作業 으로 감시적 조치 미비</p>	<p>영 作業場內의 照明은 作業點에 明暗이 현저하지 않도록 배치하여 차각 등 不安全行動의 소지를 없ेल것.</p> <p>—單獨作業시는 相互감시가 되도록 배치하고 감시가 방해되는 일이 없어야 함 ( 이 被害者는 單獨作業인 동시에 기계와 기계사이에 2 m가까이 높은 製品저장화가 完全히 고립시켜 놓았음 )</p> <p>—各 係別, 部署別 工具管理箱子 또는 선반을 設置</p> <p>—災害豫防對策 및 活動狀況 및 實績을 當該 部署長이 確認하고 最高經營者가 決裁도록 措置</p> <p>◦ 技術的 事項</p> <p>—프레스機, 주조기, 시험기등 危險機械에 대하여는 安全裝置 設置</p> <p>—單獨 作業部署의 機械配置는 作業工程을 고려하여 連結作業部署와 相互補完의 監督이 容易하도록 配置 ( 製品등이 視野를 막지 않도록 通路를 적절히 連結 )</p> <p>—모든 安全裝置는 操作取扱이 容易하도록 措置</p>	
<p>4) 技術的 事項</p> <p>① —危險機械의 安全裝置 設置狀態 未備</p> <p>② —單獨 作業部署의 機械 配置 不適當</p> <p>③ —一般的의 安全裝置미흡</p>	<p>—전기분전반은 鐵製로 하되 반드시 덮개를 하고 安全標識 附着</p> <p>—開口部는 墜落, 失足등을 防止하기 위하여 울, 덮개, 손잡이, 보호망을 設置</p> <p>—危險部署 作業時의 保護具 着用 및 使用徹底</p>	

나. 重點事項

問　題　點	對　策	備　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兩手操作式 防護裝置인 누름 단추 또는 操作레버의 간격 ( 5 cm ) 이 너무 가깝게 設 置되어 있어 조작중 신체가 危險구역 접촉위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兩手操作式 防護裝置인 누름단추 또는 操作레버는 반드시 두손을 使用하되 조작시 身體의 일부가 作業點에 들어 가지못하게 設置하여야 함. ( 30 cm ) 상의 간격 ), 作動直後 손이 危險區域에 들어 가지 못하도록 危險區域으로부터 다음에 정하는 거리이상에 設置하여야 함. 距離 ( cm ) = <math>160 \times \text{프레스機 作動直後 作業地點까지의 到達時間 ( 초 )}</math></li> </ul>	同法 第 25 條 勞動部告示 第 4 號 第 7 條 기술상의 지침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누름단추 ( 操作레버 ) 가 作業 時 安全性을 確保할 수 있는 正常位置보다 높게 設置되어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누름단추 ( 操作레버 ) 的 위치를 낮추어 作業時 安全性 確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照明施設이 作業者의 뒷면에 위치하고 있어 作業地點이 그림자에 가려 水壓試驗 結果를 判斷하는데 支障招來</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照明施設은 作業地點에 그늘이 생기지 않도록 設置하고, 作業面의 照度가 超精密作業時 600 루스, 精密作業時 300 루스, 普通作業時 150 루스 其他 作業時에는 70 루스 이상이 되도록 措置</li> </ul>	